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2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정성국·서천호·진종오

이헌승 · 곽규택 · 김용태

조정훈 • 박수영 • 김예지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신고나 고소·고발을 당한 교원의 심리적·정신적 소모가 심화되고 수사에 대비한 법률서비스 비용도 증가됨. 또한 사건 수사에 따른 교원 공백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 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으로 제시한 경우에 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 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단서 조항 신설).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1조의2의 제2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	
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단</u> , 제11조의2의 제2
	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
	단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경
	찰관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u>아니할 수 있다.</u>